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 2022. 11. 2.

 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○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·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 공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 명확회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사용료 감면 확대·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별표 2,3의 비고)
-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)
-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-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·문화강 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- 안 제1조,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을 구체화하고 시설의 사용, 강습프로그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이 명확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 및 안 별표 2,3의 비고란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학교의 체육활동 50% 감면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30% 감면 등 감면 대상을 확대, 재정비함.
- 안 별표1은 환경개선에 따른 체육시설 규모와 주요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, 안양천 체육시설 규모 축소는 축구장 3면 중 1면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것에 기인함.
-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11조는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약칭 사용 등으로 조문을 간결히 함.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.

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5 호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·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명확화(안 제1조, 2조)
- 나. 공공체육시설 구민 감면 신설 및 사회적약자 등 감면 확대(안 제9조, 별표 2,3의 비고)
- 다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관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감면 규정 정비(안 제5조, 제9조, 별표 2,3의 비고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체육시설의 설치、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: 2022. 9. 22.~10. 1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구민의 심신단런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"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과 건강·여가선용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"시설의 사용"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·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강습프로그램"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·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, "강습프로그램 수강료"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5조제1호 중 "영등포구"를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"를 "영 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영등포 구"를 "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영등포구민"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 하 "구민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"영등포구민"을 "구민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영등포구의"를 "구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영등포구 가"를 "구가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영등포구"를 "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"을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,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"을 "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"으로 한다.

### 1. 50% 감면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
- 차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### 2. 30% 감면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(다만,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)
- 나.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 을 둔 부모와 그 자녀
- 다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 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
제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(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)
- 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
-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사용 허가"를 "사용허가"로 한다.

별표 1의 안양천 체육시설의 신정교<sup>~</sup>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)	23.108m²	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-게임장 1면 농 구 장 2면 축 구 장 2면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

별표 1의 유수지 체육시설의 신길 유수지의 주요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

별표 2 ○ 개인사용료 비고란 제2호 중 "강습프로그램사용료"를 "강습프로그램 수강료"로 하고, 같은 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란 제7호(종전의 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 제하고, 같은 란 제6호(종전의 제7호) 중 "이용료"를 "사용료"로 하며, 같은 란 제 10호 중 "사용료 등"을 "수강료 등"으로 한다.

7.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.

별표 2 ○ 전용사용료 비고란 제3호 중 "각종행사 개최시"를 "각종 행사 개최 시"로 하고, 같은 란 가목 중 "영등포구"를 "구"로, "구청장기"를 "구청장기(배)"로 하며, 같은 란 나목 중 "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"를 "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"로, "협회별"을 "단체별"로 한다.

별표 3의 비고란 제4호 중 "각종행사 개최시"를 "각종 행사 개최 시"로 하며, 같은 란 가목 중 "영등포구"를 "구"로, "구청장기"를 "구청장기(배)"로, "개최시"를 "개최 시"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"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등의 개최시"를 "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"로, "협회별"을 "단체별"로 한다.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같은 란 제9호 중 "아니 한다"를 "아니한다"로 하고, 같은 란 제10호 중 "강습프로그램 사용료"를 "강습프로그램 수강료"로 한다.

5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

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,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6.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,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	제1조(목적)
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	
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	
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	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
하여 <u>구민의 심신단런 및 건전</u>	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
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	문화・복지 증진과 건강・여가
목적으로 한다.	<u>선용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시설의 사용"이란 체육시설	2. "시설의 사용"이란 이용자가
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	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
	<u>시설에서 체육·문화 등의 프</u>
	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
	<u>다.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"강습프로그램"이란 구청장
	<u>이 운영하는 체육·문화 강습</u>
	프로그램을 말하며, "강습프로
	그램 수강료"란 강습프로그램
	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
	<u>한다.</u>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체육	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	
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	

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.

- 1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<u>영등</u> 포구의 행사
- 2. 영등포구체육회 및 <u>영등포구</u> 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 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 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,
- 3. <u>영등포구</u>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4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<u>영등포구민</u>의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

5. · 6. (생략) 제7조(시설의 개방) ① (생략) 저

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이 용기회 부여는 <u>영등포구민</u>을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

<u>.</u>
1 <u>서울</u>
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
<u>한다)</u>
2 <u>영등포구</u>
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
<u> 종목단체</u>
3. <u>구</u>
4
서울특별시 영등포
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-
5. · 6. (현행과 같음)
세7조(시설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 )
②
· 구민
<u>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

게 할 수 있다. ③ (생략)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. 1.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영등 포구의 행사 및 경기 2. · 3. (생략) 4. 삭 제 5.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 구교실, 청소년풋살교실, 어린 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,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 용할 때 시설을 사용할 때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 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2. · 3. (현행과 같음)

5. <u>구가</u>	 	 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---

## 1. 50% 감면

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|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- 6. 영등포구 대표선수가 해당종 | 6. 구 -----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정한 개인사용료의 100분 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| 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

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대우에 관한법률」에서 정한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・유족

람

- 나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
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
  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
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 사람
- 바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 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
   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
   사람
- 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 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인과 함께 오는 보호자 1명

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

차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

2. 30% 감면

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 상의 노인(다만,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 더 적용한다)

나.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둔 부모와 그 자녀

다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

 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

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2

 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

 보상대상자

<u><삭 제></u>
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

따른 수급자

- 4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 │ <삭 제>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 인
- 5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 모와 그 자녀
-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, 안양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. 1. 초등학생 이하 사용료
- 2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 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 용할 때
-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 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 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
<삭 제>

- -----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 -----
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(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)
- 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 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
-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 용하여 감면한다.
- 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  - (1)

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<u>사용</u> <u>허가</u>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### [별표1]
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 <u>)</u>	30,508m²	<u>안타산케트장 1면</u> 농 구 장 2면 축 구 장 3면
유수지 체육시설	신길 유수지	3,679m²	조강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

### [별표2]

### ○ 개인사용료 비고

- 1.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 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.
- 2. 수영장, 골프연습장의 윌 사용료는 <u>강습프로그램사용료</u>를 포함 한 금액으로 한다.
- 3.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
- 4.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<u>프로그램 사용료를</u>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
- 5.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 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6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.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 행령」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 면한다.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- 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 0을 감면한다.
- 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 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마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7.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<u>이용료</u>의 10 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
- 8.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- 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.

### ○ 전용사용료 비고

	<u>사용</u>
<u>허가</u>	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## [별표1]
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)	23,108m²	조기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-게임장 1면 농 구 장 2면 축 구 장 2면
유수지 체육시설	신길 유수지	3,679m²	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

#### [별표2]

### ○ 개인사용료 비고

- 1.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력단련장 등을 제 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.
- 2. 수영장,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<u>강습프로그램 수강료</u>를 포 험한 금액으로 한다.
- 3. 토·일·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
- 4.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<u>시설</u> <u>의 월 사용료</u>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5.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6.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<u>사용료</u>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
- 7.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 면한다.
- 8.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- 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 램 <u>수강료 등</u>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 그램 <u>수강료 등</u>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.

### ○ 전용사용료 비고

- 1.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.
- 가.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
- 나.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
- 2.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기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- 3.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<u>각종행사 개최시</u>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
- 가. <u>영등포구</u> 주관 및 <u>구청장기</u>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
- 나. <u>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</u>는 1 00분의 80을 감면한다.(단, <u>협회별</u> 연 1회로 한정한다)
- 4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
### [별표3]

### 비고

- 1.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 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기산한다.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
- 2.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 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. 진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.
- 3.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~2월은 07:00~18:00, 3월~ 10월은 06:00~19:00 까지로 한다.
- 4.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<u>각종행사 개최시</u> 전용사용료 감면 율은 다음과 같다.
- 가. <u>영등포구</u> 주관 및 <u>구청장기</u> 대회 등 행사 <u>개최시는</u>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
- 나. <u>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</u> 00분의 80을 감면한다.(단.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)
- 5.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 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기족・유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- 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라. 「노인복지법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 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마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6.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,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.
- 7.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 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.
- 8. 실외체육시설의 아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 의 30을 가산한다.
- 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,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

- 1.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.
- 가. 토·일·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 산하다
- 나. 이같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
- 2.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기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- 3. 사용료 중 체육진홍을 위한 <u>각종 행사 개최 시</u> 감면율은 다 음과 같다.
- 가. <u>구</u> 주관 및 <u>구청장기(배)</u>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
- 나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.(단, <u>단체</u> 별 연 1회로 항정한다)
- 4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
### [별표3]

#### 비고

- 1.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본다.
- 2.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 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,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.
- 3.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~2월은 07:00~18:00, 3 월~10월은 06:00~19:00 까지로 한다.
- 4.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<u>각종 행사 개최 시</u>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
- 가. <u>구</u> 주관 및 <u>구청장기(배)</u> 대회 등 행사 <u>개최 시</u>는 100분 의 100을 감면한다.
- 나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 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.(단,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.)
- 5.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 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 장,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6.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,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.
- 7.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.
- 8.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 분의 30을 가산한다.
- 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기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, 사용료 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
- 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<u>강습프로그램</u>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<u>강습프로그램</u>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.

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 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.